



제 1138 호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3- 1556호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2
- 공고 제2013- 1571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 예고 13
공시송달(공고)
- 공고 제2013- 15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16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3- 15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26
조례(안)입법예고
- 공고 제2013- 1592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인천구월 보금 38
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9차>)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0
공고 제2013- 36호 예정 공고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1
공고 제2013- 37호 예정 공고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2
공고 제2013- 38호 예정 공고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3
공고 제2013- 39호 예정 공고

고 시

- 고시 제2013- 11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만부경로당)사업 44
실시계획 고시
- 고시 제2013- 113호 도로명주소 고시 46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5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 정 이유
 - 남동구 직원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 조성
 -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소속직원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3. 주 요 제 정 내 용
 -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방향 마련
 - 내부통제위원회 내부적 근거 마련
 -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기준 마련
 -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운영 기준 마련
 -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 기준 마련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기준 마련
 -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73, FAX 453-2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11 월 1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 이유

- 남동구 소속 직원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조성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직원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주요 내용

-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방향 마련
- 내부통제위원회 내부적 근거 마련
-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기준 마련
-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운영 기준 마련
-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 기준 마련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기준 마련
-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

☐ 본 문 : “ 별 첨 ”

☐ 신·구조문 대비표 : “ 해당 사항 없음 ”

☐ 참고 사항

-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 2013. 11. 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과·소·동장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과·소·동장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장 및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남동구의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울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주무)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 민원업무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청백-e 시스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기타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①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3. 정보화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①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14조(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기타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된다.

④ 사·군·구청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사·군·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15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 예고를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년 11월 4일 ~ 2013년 11월 22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 예고	
2. 당사자	성 명	별지참조
	주 소	별지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부동산의 표시	별지참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 예고	
6. 법적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3)	

공공기록정보 등록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이름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부동산의 표시	비고
1	박성희	6209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길 77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82	
2	공진숙	621028-*****	강원도 속초시 장안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40-1	
3	윤일에너지(주)	281111-*****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76-6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76-6	

공공기록정보(연체정보) 등록 예고문

1. 항상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에 대한 과태료 조회결과 과태료 독촉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아래의 체납된 과태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계십니다.
3. 아래 체납된 과태료를 **2013. 10. 31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시는 경우 부득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공공기록정보(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예정이오니, 조속히 납부하시어 금융거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내역

2013년 10월 16일 현재

(단위:원)

과세연도	과 목	체납액	납부기한	비고

※ 위 금액은 2013. 10. 16. 현재 체납액으로, 예고문 수령전에 기 납부하신 분은 폐기처분하시기 바라며, 체납액 납부시에는 아래 방법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좌납부 : 신한은행 000-000-0000-0000,
(귀하에게 부여된 가상 납부계좌임)
2. 전자납부 : <http://etax.incheon.go.kr/>에 접속 (세외수입 납부하기)

2013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5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시책 수요 반영 및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시행(‘13.12.12)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인력 운용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정원의 총수 변경 : 882명 ➡ 883명 [안 제2조]
 - 국가안전시책 수요 반영 : 1명
 -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 [안 별표1]
 -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 일반직 재편
 - 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삭제
 - 라.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구 분			조 정 내 역		증 감
			현 행	조 정 (후)	
총 계			882	883	+ 1
직급별	일반직	계	802	879	77
		6급 이하	736	813	77
	기능직	계	76	-	△76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24조~제25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시책 수요 반영 및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시행(‘13.12.12)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인력 운용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코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 : 882명 ➡ 883명 [안 제2조]
- 국가안전시책 수요 반영 : 1명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 [안 별표1]
-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총 76명)→ 일반직 재편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삭제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구 분			조 정 내 역		증 감
			현 행	조 정 (후)	
총 계			882	883	+1
직급별	일반직	계	802	879	77
		6급 이하	736	813	77
	기능직	계	76	-	△76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24조
○ 비용추계서 : 추가소요 인건비 55,111,000원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82명” 을 “883명”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863명” 을 “864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882명” 을 “883명” 으로 한다.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4% 이내	31% 이내	4%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 율	34% 이내	34% 이내	32%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88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79	-				
	3급	1	1				
	4급	6	4	1	1		
	5급	59	28	2	8	2	19
	6급 이하 계	813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 88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 863명 2. 의회사무기구 : 19명 3. 총 계 : 88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883명----- ----- 1.-----864명 2. (현행과 같음) 3.-----883명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일반직</th><th>기능직</th><th>별정직·정무직</th></tr><tr><td>비율</td><td>90% 이상</td><td>9% 이내</td><td>1% 이내</td></tr></table>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일반직</th><th>별정직·정무직</th></tr><tr><td>비율</td><td>99% 이상</td><td>1% 이내</td></tr></table>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비율</td><td>1%이내</td><td>8%이내</td><td>23%이내</td><td>33%이내</td><td>30%이내</td><td>5%이상</td></tr></table>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비율</td><td>12% 이내</td><td>45% 이내</td><td>40% 이내</td><td>3% 이상</td></tr></table>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5급 상당 이상</th><th>6급 상당</th><th>7급 상당</th><th>8급 상당</th></tr><tr><td>비율</td><td>34%이내</td><td>34%이내</td><td>32%이상</td><td>-</td></tr></table>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8%이내	23%이내	33%이내	30%이내	5%이상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45% 이내	40% 이내	3% 이상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율	34%이내	34%이내	32%이상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비율</td><td>1%이내</td><td>7%이내</td><td>23%이내</td><td>34%이내</td><td>31%이내</td><td>4%이상</td></tr></table>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삭 제》 2. 별정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5급 상당 이상</th><th>6급 상당</th><th>7급 상당</th><th>8급 상당</th></tr><tr><td>비율</td><td>34%이내</td><td>34%이내</td><td>32%이상</td><td>-</td></tr></table>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3%이내	34%이내	31%이내	4%이상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율	34%이내	34%이내	32%이상	-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8%이내	23%이내	33%이내	30%이내	5%이상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45% 이내	40% 이내	3% 이상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율	34%이내	34%이내	32%이상	-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3%이내	34%이내	31%이내	4%이상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율	34%이내	34%이내	32%이상	-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 업 소	출 장 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 업 소	동	
총 계	882	-						총 계	883	-					
정무직 계	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2	-						일반직 계	879	-					
3급	1	1						3급	1	1					
4급	6	4	1	1				4급	6	4	1	1			
5급	59	28	2	8	2	19	19	5급	59	28	2	8	2	19	
6급 이하 계	736	-						6급 이하 계	813	-					
별정직 계	3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76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5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3.11. 6 ~ 11.28 (23일)
3.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가. 재난발생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제로 전환(안 제3조)

-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의 명확화(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과 운영시기 명문화

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안 제5조)

-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

라.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지정 (안 제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실장 (국·실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실·소장(국·실·소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마.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대응 (안 제8조 ~ 안 제21조)

- 1) 재난현장 상황전파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재난현장 상황통보, 재난지역 주민대피
- 2) 재난현장 출동 :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 출동지원
- 3) 재난현장 조치 :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현장 상황파악·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활동 지원
- 4) 재난현장 긴급복구 :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재배치(안 제22조)

사.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안 제24조)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405-702/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안전관리과 (전화 032-453-2312, 팩스 032-453-23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동섭
(전화 032-453-2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 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남동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기타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실장(국·실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실·소장(국·실·소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남동구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관(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기관(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기 (부 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592호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9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9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9차>
3. 사업의 위치 : 인천 남동구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3.11.07. ~ 2013.11.22.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2)
6. 수용재결신청물건 : 별첨 사업자제시액조서 참조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제시액 조서(물건)

사업지구 :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평가액						사업자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비 고	
								A		B		C		평균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남동구 구월동	587-16	밀링	2호	1	대	1/1	0	0	0	0	0	0	0	0	0	인천 남동구 오봉로 33, 206동201호(도림 동,도림주공그린 빌2단지아파트)	진**				
		587-16	연마기	중형	1	대	1/1	0	0	0	0	0	0	0	0	0						
		587-16	방전기	본체,콘트롤박 스	1	대	1/1	0	0	0	0	0	0	0	0	0						
		587-16	컴프레샤1	5hp	1	대	1/1	0	0	0	0	0	0	0	0	0						
		587-16	컴프레샤2	20hp	1	대	1/1	0	0	0	0	0	0	0	0	0						
		587-16	체인블럭	일,본체,바닥 철판	1	식	1/1	0	0	0	0	0	0	0	0	0						
		587-16	작업다이	철재	5	개	1/1	0	0	0	0	0	0	0	0	0						
		587-16	집진기	0.5*0.5*1	1	개	1/1	0	0	0	0	0	0	0	0	0						
		587-16	용접기1	알곤	1	개	1/1	0	0	0	0	0	0	0	0	0						
		587-16	용접기2	전기	1	개	1/1	0	0	0	0	0	0	0	0	0						
		587-16	용접기3	산소	1	개	1/1	0	0	0	0	0	0	0	0	0						
		587-16	선반	0.5*0.7*2	1	개	1/1	0	0	0	0	0	0	0	0	0						
		587-16	캐비닛	0.4*1.2*2	1	개	1/1	0	0	0	0	0	0	0	0	0						
		587-16	에어콘	미설치	3	대	1/1	0	0	0	0	0	0	0	0	0						
		587-16	기타공구류	일체	1	식	1/1	0	0	0	0	0	0	0	0	0						
		587-16	기타집기류	일체	1	식	1/1	0	0	0	0	0	0	0	0	0						
		587-16	제품	소형32박스,대 형30박스	1	식	1/1	0	0	0	0	0	0	0	0	0						
		587-16	금형	12개	1	식	1/1	0	0	0	0	0	0	0	0	0						
		587-16	전기	15kw	1	식	1/1	0	0	0	0	0	0	0	0	0						
		587-16	영업보상		1	식	1/1	0	4,400,000	0	4,200,000	0	4,200,000	4,266,660	0	4,266,66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3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1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1. 05. ~ 2013. 11. 14.(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논고- 162	빵심이 착한식당	이상연	은청로 36, 제1동 102호(고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2.20	2013.11.1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1. 1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3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37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1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1. 05. ~ 2013. 11. 14.(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논고- 78	와우	이재권	논고개로123번길 45-1, 7층 (논현동, 로얄프라자)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2.31	2013.11.1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1. 1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3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3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18.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1. 06. ~ 2013. 11. 15.(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만수3-61	토크쇼	황미양	백범로226번길 40-7, 1층 (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7.12.12	2013.11.18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1. 1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3년 1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3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19.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1. 08. ~ 2013. 11. 18.(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만수1- 172	루리	이소리	하촌로 55, 1층 (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10.30	2013.11.19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1. 18.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3년 1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3 - 11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만부경로당) 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 만부경로당】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년 1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6, 1-44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만부경로당)
 - 명 칭 : 만부경로당 신축 공사
3. 사업의 규모
 - 지상2층 / A=99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4. 5.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용 지 조 서

조 서 번 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1	만수동	1-446	임	331	331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만수동)			
2	만수동	1-447	임	660	660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만수동)	구분지상권	한국전력공사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132㎡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113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68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21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1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2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1.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3-5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9번길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5-6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5번길	6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4-11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90번길	4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8-9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5번길	6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4-10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12번길	1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0-9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12번길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0-11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1-2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3-7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21번길	20-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5-4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18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19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3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20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3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7-1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7번길	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7-4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7-5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1번길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7-22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1번길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7-23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64-15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1번길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4-16	2013.11.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0번길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주2,2블럭5로트	2013.11.08	건물번호 부여 오류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에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2외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68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소래포구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제명	2013.11.0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 66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68을 건물번호로 부여	